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2. 10.(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오늘 외부 회의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만 위원회에 도착하시는 대로 회의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오늘 방청은 총 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사업자 (2014-58-23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재)극동방송 광고FM방송국은 해당 사업자의 신청내용과 같이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연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법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도 역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심사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5개 방송사업자(13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각 방송국별 평가점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13년 재허가시 우수사업자와 미흡사업자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차등 부과한 기준을 이번에도 유지하되, 사업자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허가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13년 재허가시 부과한 공통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외에 해당 방송사업자별로 의무사항 등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도 조건 또는 권고를 통해 이행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라디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내실 있는 자체 심의기구 운영 및 시청자 불만처리 등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BS에 대해서는 '10년도 재허가 조건인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이 다소 미흡하게 이행된 점과 콘텐츠의 품질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번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프로그램 제작비를 계획대로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옥이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17년 신사옥 이전 계획 등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BN에 대해서는 '10년도 8월 울산FM과 그 이후 허가된 방송국에 대해 보도편성 금지가 허가조건으로 부과되었고, 대표자 의견청취 시 관련사항이 거둬 확인됨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보도편성 금지'를 명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TBS에 대해서는,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도록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

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 성격, 운영의 효율성 및 재원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방송평가를 재허가 기간 중 일부만 반영하고 있는데 특정 기간이 누락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과 충실성 등을 재허가 심사시 반영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미래부의 기술 심사결과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무선국 혼신해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재)극동방송 광주FM방송국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바와 같이 (재)극동방송이 허가 받은 타 방송국 허가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허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정책 건의사항은 허가·승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고,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허가 조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영어FM을 제외한 12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그리고 종합편성인 TBS의 영어FM에 대해서는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라디오인 TBN, TBS, 국악방송,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자체심의기구 운영 및 시청자불만처리 등 구체적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5개 방송사업자(13개 방송국) 전체에 대해서는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두 번째는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세 번째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등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EBS의 DTV와 FM에 대해서는 2014년도 재허가 신청 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계획대로 투자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등입니다. TBN의 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편성에서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 외의 보도를 제외할 것, 다음 극동방송의 광주FM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송제작비와 방송시설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두 번째는 방송편성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제공 외의 보도를 제외할 것 등입니다. TBS의 영어FM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의 언어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해야 함, 다국어방송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국

어방송 편성비율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두 번째 청취자 위원회 구성 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다만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5개사 13개국 모두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지상파 라디오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두 번째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 세 번째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네 번째 미디어렐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EBS에 대해서는 첫 번째,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안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구노력 등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두 번째 수신료 인상시 경영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세 번째 수신료, 광고 등 재원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네 번째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 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것, 다섯 번째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여섯 번째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일곱 번째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 여덟 번째 UHD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TBS의 교통FM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독립법 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 성격, 운영의 효율성 및 재원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다음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국악방송의 가청취권 확대는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기존 보조국의 방송국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할 것, 다음 TBN과 TBS에 대해서는 과도한 협찬 운영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그리고 TBS의 영어FM에 대해서는 청취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영어 외의 언어로 방송하는 경우 기존 영어FM에서 방송하는 다국어방송임을 고지할 것, 이상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5개 사업자(13개 방송국)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 의견이나 EBS 권고사항으로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안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자구노력 등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첫 번째로 권고사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EBS 통합사옥 이전 때문에 이 권고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 통합사옥 이전에 따라 재정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심사위원들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EBS가 고양시에 신축하는 사업비가 1,9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 출자가 506억 원이 들어가서 EBS가 자체적으로 1,400억 원을 조달하는데 그중에는 현재 쓰고 있는 사옥을 매각해서도 조달하지만 상당액을 또 부채로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17년도에 이전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나 이자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경영의 적정성이나 재정능력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EBS의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도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구노력 할 것, 그다음에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시행할 것'..., 어느 정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EBS의 자구노력이나 재무구조 건전성 방안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일단 심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고 EBS에게는 수익을 확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EBS에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처럼 '18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나는 것으로 저희에게 추정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사옥 이전을 하는 '17년도에는 방통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수능방송도 수능에의 반영 비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교재비도 인상 최소화 내지 동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원 안정화나 재무건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계획대로 투자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한다고 했지만 자구노력,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예를 들어 ‘어느 시점까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점,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서부터 그다음 상반기에 걸쳐 EBS에 대한 정부 출자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지원 부분에 대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점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방송사업자 허가, 즉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옥을 건립하다 보면 사업지가 아무래도 애초 계획 대비 증액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했을 당시보다 재정구조가 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통상적으로 재허가 조건에는 붙이지만 권고사항에는 ‘매년 또는 매반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것’ 이런 것은 잘 안 붙이나 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EBS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육방송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콘텐츠로 훌륭한 방송을 계속해 나가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EBS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지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재허가 심사할 때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은 그동안 어떤 취지로 부여해 왔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방송법이나 시행령에 나오는 허가사항은 허가 심사 기준, 기본계획을 지난 9월에 의결해 주셨다시피 그런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만, 심사위원들께서 평가하면서 그것은 점수로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좀 더 정부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여하고, 허가조건의 경우에는 기간을 주어서 이행실적을 받아서 점검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반드시 시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재까지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은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권고사항을 언제부터 부여하기 시작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통상 허가조건, 재허가조건 이렇게 붙이지 권고사항을 또 붙이고....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나 재허가할 때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먼저 심사과정에서 물론 당락 기준으로 봐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해서 재허가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 심사항목별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는 것들을 지적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허가·재허가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방송정책이나 방송법상 여러 가지 제도에 부합되는 내용 중에 스스로 계획을 낸 것에 대해 중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넣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재허가조건 중에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앞으로 한 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통위의 정책 그리고 관련된 제도들을 리뷰해서 보완·개선 내지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나 또는 그런 것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과 재허가 조건에 부과해야 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재허가 조건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사업자에게 특별하게 해당하는 몇 가지 포인트만 딱 넣어서 허가조건으로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허가 조

건 중에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이 있는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인 경우에 전문분야 편성을 당연히 강화해야 하고, 부편성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이런 말이나 그다음에 공통사항 중에서 ‘무선국의 혼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등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미래부의 기술 심사 과정에서 부관사항으로 보내 왔던데 그 부관사항을 적시하기 이전에, 물론 기술심사 결과는 다 적정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부관으로 붙여야 하느냐, 부관이라고 넣은 내용들이 당연히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여기에 안 넣어도 이것을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이 없어도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넣음으로 해서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톤다운(tone down) 해서 인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TBN 개별사항 중에 ‘방송편성에서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 외의 보도를 제외할 것’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이 보도입니까, 아닙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유사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제공은 보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도가 아닌데 ‘정보제공 외의 보도를 제외할 것’ 이 자구는 교통, 기상 정보제공이 보도 내지 유사보도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편성 전체 사업자에 대한 공통부관과 TBN과 극동방송에 부과된 ‘보도를 제외할 것’ 이 부분을 특히 부과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이 이 정보제공과 보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공통에 대한 부관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사들은 보도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편성하는 것도 있고 또 정보제공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해 주기 위해 이번에 허가조건에 넣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는 아는데 지금 이기주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방송편성에서 교통이나 기상 관련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보도는 하지 말 것’,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쓰면 마치 보도 중에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은 보도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되고 나머지 보도는 하지 말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정보제공과 유사보도와 보도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 말이 하여간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구가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할 때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에 한해서 편성하고 운영하라는 말과 이 말은...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재허가 과정에서 보니까 제도상의 문제, 앞으로 해당 분야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과 심사 과정에서 재허가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갈수록 우리의 정책의지를 담고 싶어서 권고사항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급적 구분해서 재허가 심사할 때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TBN의 자구는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은 시간을 가지고 재허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클리어하게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수정해 볼 여지는 혹시 없을지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편성에서 교통, 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보도는 제외할 것’ 조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제공과 보도는 문언 상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보제공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보도냐는 구분이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치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 또는 기독교 관련 정보제공이 보도의 한 부분인데 그것은 허용하고 나머지 보도는 제외하는 것처럼 읽힐까 봐 우려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편성에서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 하는 것 이외에는’ 그것도 안 됩니까? 어렵네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송편성에서 교통, 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되’라고 하면 그것은 2개가 다른 것이라는, 의미가 조금 살아납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거나 ‘방송편성은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에 한할 것’은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에 한하는 것'은 다른 편성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편성에 교통, 기상 관련 정보제공은 포함시킬 수 있고, 보도는 제외할 것….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님이 계시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TBN은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문언은 나중에 실무팀들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TBN은 방송국 자체가 스스로 '보도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언은 적절하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기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체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큰 뜻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관례대로 쪽 해 왔던 사항이 주로 반영이 됐고, 이번에 저도 하면서 느낌이 어쨌든 재허가 심사위원님들에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다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또 각자 자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방송에 대한 철학과 의지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편성 부분만 해도 법에는 분명히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희석시켜서 확장해 나가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있다고 해서 딱 그것으로 항상 적용시켜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 주는 의미를 담아서 조건이나 또 권고사항에 넣어서 위원회의 법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편성 부분도 그렇고, 또 시청자위원회 쪽 활동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것도 그것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은 항상 또 시청자 쪽의 의견을 중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기술적인 부분은 미래부 쪽에서도 요청해 온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재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EBS가 지난번에는 4년 재허가 기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역시 신사옥 건설 문제 때문에 채무상 건전성 문제를 방통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우려에서 점수가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낮게 평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 재허가가 주어지면서 그 3년 재허가가 2017년 신사옥이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EBS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TBN의 허가조건 내용이 똑같이 극동방송 광주FM 두 번째 조건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이번 재허가 때만 이 자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구를 생각하기보다 이 허가조건에 대해 한 번 두루 살펴서 오늘 회의 이후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과 방송정책국이 의논해서 이 자구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면 가고 보완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고 그런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일제히 우리가 정비할 때 정확한 자구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리한 것처럼, 위원님들 다 어떤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맡겨 주시면 제가 오늘 의결할 때 그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 방송정책국과 협의해서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필요시' 라고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필요할 때... 그리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해 주신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재허가 심사사항과 배점에 관한 기본 내용을 확정해서 정하고 공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내년 초에는 이런 방송사업자 재허가나 재승인들이 거의 없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연말에 일부 조금 있을 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들어갈 것과 권고사항에 들어갈 것, 또 각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거에 쪽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까지는 그대로 가되,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구분도 하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법이나 시행령 또는 규칙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여기에 담을 것인지, 그렇다고 또 하나도 안 담는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방침을 정해 놓고 다음 심사 때부터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건은 그 재허가 조건 부분... 김재홍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대로 하세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 안건은 표현을, 혹시 더 적절한 표현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2014-58-23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입니다. 재허가 조건입니다. 7개 방송사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금지하고, 현재 편성하고 있는 유사보도프로그램의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② 청취자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일 최소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③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④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 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⑤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마포·성서·영주·공주FM에 대해서는 방송의 다양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관악FM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를 분리하고, 그 이행실적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7개 방송사에 대한 공통사항은 ① 방송심의 규정준수 및 방송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인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갖출 것, ②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원구조 다양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 ③ 방송평가회 운영결과를 방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등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관악·성서·영주·광주·공주FM에 대해서 방송의 품질제고를 위해 적정한 재방송 비율 유지 등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법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심사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의 평가점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재허가대상사업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지역주민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 및 지역 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등 편성의 적절성, 방송운영과 편성의 분리, 청취자 권익보호, 인력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혼신원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노력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7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존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에 따른 미래부의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결주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방송국에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다른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해 주신 이기주

위원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 심사에 3일 동안 참여해 보니까 앞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셨지만 해당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과장, 사무관들이 다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저는 처음에 약간 소모적인 작업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3일 동안 심사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은 해당 분야의 방송사업자들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방통위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캐치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 경우에 7개가 되어 있지만 7개 사업자 간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기술적인 측면, 또 거기에 방송되는 내용이 편차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번이 9년째입니까? 내년이 도입된 지 10년이 된다고 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내년이 10년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현황을 정리도 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이 사업자들이 심사과정에서 건의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통위에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지, 필요하면 제도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술 분야, 정책 분야 내지는 회계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도 꼼꼼히 검토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분들과 같이 조인트로 하든지, 연구과제 형태로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원타임으로 재허가 프로세스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일종의 발전방안이라고 해야 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하는지들을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이기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사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허가가 됐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매체입니다. 그런데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보면 실제로 일반 매체에 대한, 일반 미디어에 대한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들이 거의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초 공동체라디오를 허가할 때와 달라진 환경이 뭐냐 하면 지금 팟캐스트와 같은 인터

넷 매체를 활용한 공동체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 발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또한 그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에 대한 그리고 지역밀착형 매체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저희 나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지역밀착형이라는 것에서부터 다양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매체인데 동네 라디오방송이지만 하여튼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발기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까? 재정이 어려울 텐데 아주 소규모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든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방발기금을 지원한 적은 없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발기금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이나 미디어 교육지원, 시청자 권익활동지원비로 해서 올해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8,400만원 정도, 공동체라디오가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입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분야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발기금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프로그램 제작지원 중심으로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대부분이고 또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일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런 소규모 방송,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팟캐스트 방송도 있는데 그런 다

양성을 구현하는 또는 지역성도 좋고, 소규모 방송이 되어서 방통발전기금을 아주 원활하게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번에 3개가 늘어 5개가 됐는데 혹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 지역은 그것과 연계해서 도움을 줄 방법은 없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IT 기술에 의한 다양한 매체나 융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공동체라디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지역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도 생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생각나는 김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지원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RTV라는 시민방송이 있었는데 어렵게 정말, 재야 지식인들이라고 할까, 방송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요즘 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방송문화의 다양성과 소그룹방송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는데 우선순위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RTV 시민방송, 오랫동안 백낙천 교수 같은 분들이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정책을 정책적인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말씀 나온 김에 시민방송 RTV 아시지요? 요즘 방통발전기금 지원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잘 아시다시피 일반PP를 포함해서 제작지원금을 통한 전반적인 진흥정책을 미래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미래부에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발기금 징수는, 물론 유료방송 쪽 홈쇼핑이 많이 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발기금 운용 면에서 발언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연고권을 행사하더라도 운용하는 데 함께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공익채널, 공공채널..., 지나가니까 잊었는데 방통위와 미래부가...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미래부가 공공채널 3개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익채널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하간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RTV(시민방송)이 거기에 과거 선정 내지는 지정이 됐었던 적도 있고, 지금 상태는 그 어디에도 선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공익채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특정 매체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매체를 떠나서 프로그램 제작이나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지원하느냐, 앞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방송도 그렇고 특정 매체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나 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금의 지원 트렌드로 보서는 과거에는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특정 매체에 대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어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 프로그램을 해당 매체가 신청해서 그것을 따거나 지정 이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간접적인 형태로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디오도 보니까 처음 도입 초기에는 기금에서 일부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우니까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그중 하나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원요청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럼섬(Lump Sum)으로 어느 특정 매체에 얼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낙준 재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동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금사업 절차, 정산 등 사후 관리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고시하는 규정으로 이번에 「국가재정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 기금 관리를 위하여 고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시개정 주요 내용(안)입니다. 첫 번째로 타 법 개정사항의 반영입니다. 「국가재정법」 제66조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 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에서 120일로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기재부 제출 및 사업수행자의 예산 편성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한 달씩 일정을 당기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조항이 체납처분 중지·유예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중지·유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 도모를 위해 ‘계리’라는 용어를 기금의 ‘회계처리’라는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R&D에만 재투자하도록 기술료 수입을 방송사업 법정분담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동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인 KCA에 성과분석, 진행상황 점검 등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이 보고안건으로 원안대로 접수되면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입법 부문과 제도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방송사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공청회 개최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입니다.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 법률상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에 지상파, 종편·보도PP 외에 SO, 위성, IPTV 등으로 확대하여 기존 62개 의무사업자에서 157개 의무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 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을 위해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지역 등에 적합한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송의 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시, 그리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재난방송 요청 시 재난방송이 개시되고, 기타 재난 발생시에는 예보·경보 발령전이라도 방송사가 인지하여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널특성에 맞는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 IPTV 등 방송사별 채널 특성 및 보도·제작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상파·종편·보도PP의 경우는 취재, 심층보도 등의 형태로, 플랫폼 사업자는 PP 프로그램에 자막 등의 형태로 재난정보를 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방송 준칙을 정비하여 현재 고시로 운용 중인 ‘재난방송 준칙’ 및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피해자의 명예 훼손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항은 추후 시행령 및 고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부여입니다. 준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자체 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고, 기자·아나운서·PD 등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방송사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실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는 미래부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방통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송 심의규정 명확화입니다. 「방송법」상 재난방송에 대한 명확한 심의규정을 두기 위하여 재난방송 관련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송 모니터링 구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오보, 준칙 위반 여부 및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에 대한 방송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통보토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송 평가 강화입니다. 방송평가 시 재난방송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고, 오보, 선정적 보도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여, 향후 재허가·재승인시 평가결과를 반영 및 지상파, 종편, 보도PP 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배점 비율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입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한은 주관방송사가 재난관리기관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에 필요한 시스템(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CCTV 설비 등) 구축을 위해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임은 재난방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담당 전문인력 운용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비한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및 재난방송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노약자, 심신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정부와 방송사간의 원활한 재난방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연 2회 개최되고 있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주관기관을 미래부에서 방통위로 변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미래부 협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 및 DMB 중계설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재난상황, 대처요령 등이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확대입니다. 각종 재난을 신속히 보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안전처, 기상청에만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다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강홍수통제소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12월 중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배경에 입법 부문, 제도개선 부문으로 구분했는데, 제 생각에는 입법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개선 부문이라고 하고 제도개선 부문은 시설 확충, 투자 확대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 부문 내용에 보면 법률과 시행령, 고시를 개정하는 것인데 거기도 입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입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제·개정하는 협의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개선 부분이 무슨 규정이나 법령을 고치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12월 5일 개최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 중에 주요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지요.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알겠습니다. 입법 부문과 제도개선 부문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개최했는데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사의 자율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사에게 매우 과도한 의무부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뉴얼 비치와 교육 의무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IPTV의 경우 IPTV는 전국방송인데 만일 지역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주로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인 것 같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국민안전처나 미래부나 유관기관은 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정부부처에서도 참석했는데 정부부처는 잘 협의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동안 사무처에서 많이 검토해서 이런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이나 방송사까지 포함한 이런 관련기관들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재난방송이라는 것은 다른 시설복구나 인명구조 이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방송은 보도의 일환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재난 복구, 대비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약간 경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회 때 나온 의견 중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 이것이 구체적인 개선 내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오퍼레이션이 잘 되도록 하려면 실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방송사들의 사정이나 상황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재난방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재난방송협회의 주관기관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도의 일환으로 보면 당연히 방통위가 주관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반적인 시설복구나 안전대비를 생각하면 미래부를 포함해서 다른 부처가 주관기관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쪽 보니까 <13>, <14>, <15>번 시설투자, 확충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은 이것이 다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관기관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협조기관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관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1>번을 보면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가 있는데, 특히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논의 과정에서 KBS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된 것입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타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KBS와 별도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 권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KBS는 주관방송사 역할에 대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접근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2>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이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하면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보도, 그리고 효율적인 보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첫째 지상파방송이고 보도PP이고 종합편성PP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 위원회 소관의 방송사들에게 재난방송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주관기관은 미래부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방송의 개시'에 '재난사태 선포 시, 방통위·미래부가 재난방송을 요청 시 재난방송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구축되어 있고 신속·효율적으로 방송하자고 하는데, 물론 소관업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가 따로따로 재난방송을 요청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세월호의 교훈을 가지고 본다면 정부 내 재난대책시스템에 미흡한 점들,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서 개선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기 주요 정책과제로 재난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도 부처 간의 이해를 따질 것이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오늘 의결하더라도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축·운영방안, 그리고 그에 따라 정리가 되면 재난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알겠습니다. 현재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 미래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부와 방통위가 별도로 나가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안전처, 미래부와 협의했는데 아직 협의가 다 된 상태는 아니지요?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협의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물론 협의내용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원만한 협의로 이 운영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9>번에 재난방송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다 완료한 부분입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TF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같이 논의해 온 부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을 시행해야 할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지상파, 보도전문PP, 종편들인데 이것이 미래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에 전시, 전쟁 시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민방위 개념이 많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화 해라, 또 ‘주관방송기관인 KBS가 재난에 대한 취재, 얻은 자료를 다른 방송사와 공유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정말 방송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단계별로 역할을 명시하면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된 것 같기는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우리가 느꼈던 것이 재난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또는 피해자 유족들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인터뷰들을 강제로 한다든지, 하여튼 보도가 자제해야 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

이 아주 많이 노출되어서 재난방송에 대한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하게 많이 제기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다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과 매뉴얼들은 사실상 다 비치하고 있고 우리 법에도 우리 고시로 이미 재난보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재난방송에 대한 법과 시행령, 관련되는 고시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담당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방송사들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규칙과 제도를 고치는 것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 취재 기자들이 또 PD와 아나운서들이 모두 그것이 체화되어 있어야 현장에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신속 그리고 정확한 보도 그리고 정말 절제된 보도가 우리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는 잘 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15>번에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책임기관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강홍수통제소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강홍수통제소 말고 4대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강에는 홍수통제소가 없습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다른 강들도 있는데 도시규모 등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먼저 한강홍수통제소를 선정하게 됐고 점진적으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확대를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강은 홍수가 나면 똑같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왕 하려면 전체가 같이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큰 부담이 아니라면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강에도 홍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4>번에 있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빨리 마련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방송 못지않게 인터넷 모바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선 정보보안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일 앞부분에 표현을 약간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은 내용 실체와는 연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일부 다시 가다듬기로 하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아침에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방통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다는 아니지만 짧게 큰 흐름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와 사전협의를 아주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고 가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3일, 14일에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광전총국과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제1차 회의를 하고 돌아왔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중국 접근정책과 전략을 연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다른 부처와 얼마나 긴밀히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련부처 협의체, 회의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산업자원부, 심지어 외교부, 기재부까지 해 놓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협상, 협의, 대응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가 중국의 광전총국, 문화부, 국가판권국과 다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간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소속을 도외시하고 양국의 정부부처를 모아놓은 다자협의체, 이것은 정치·외교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FTA 협상단 같은 관련 정부부처도 그 커뮤니티를 한시적으로 하

는 것 말고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렇게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가지고 중국에 대응한다고 할까, 전파시킨다고 할까, 시장화한다고 중국이 느끼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문화라면 여가, 취미, 오락까지 있는데 문체부가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중국에서 중국의 문화 개념은 아까 이야기한 여가, 취미, 오락에 플러스 이데올로기, 정치이념, 철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에 매우 중요한 선전선동부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긴밀하고 실질적인 사전협약이 부족했다는 것의 한 중요한 예로, 문체부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콘텐츠의 내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정책프레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을 동렬의 범주로 콘텐츠의 한 장르로 넣고 있는데 우리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연예,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영상, 관광, 교양 이것이 방송 콘텐츠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말하자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방송으로 넣고 자기들이 중시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과 동렬로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 프레임이 다른데, 그러면 부처 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주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진행한 최경환 부총리도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견차이인데 문체부에서는 장관이 나왔고 국장이 와서 보고·설명을 했고, 물론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답변,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체부는 인력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중국 가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적인 스타들, 초고액 몸값을 받는 스타와 작가와 PD들을 지원,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초고액 몸값은 결국 아주 높은 제작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제작비 상승은 기업의 광고료 부담과 시청자들의 시청료, 수신료 부담으로 바로 전가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제가 한·중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 정부와 중국의 공산당은 그것이 대중적 문화정책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저희가 듣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류스타들의 초고액 몸값 제한령을 준비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도 제가 돌아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내부 문화정책에 관한 강화(講話)에서 ‘기성스타들의 초고액 보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강하게 했고 ‘신인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내부 강화 이야기를 부총국장이 소개하기도 해서 그 이야기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중에 문체부 측의 답변, 설명은 이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없고 지원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자율적 규제나 연예인들의 자율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장관이 했고, 다른 분야는 이견으로 남아 있고, 경제부총리는 그것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통위에 정부 간 협의체에 담당하는 과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협의하는 것인데 저는 중국을 상대로 다자협의회, 양국 간 관련부처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문화부나 미래부와 콘텐츠 산업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담당자, 정책 당국자를 하나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협의체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부의 담당자 및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0분 폐회 】